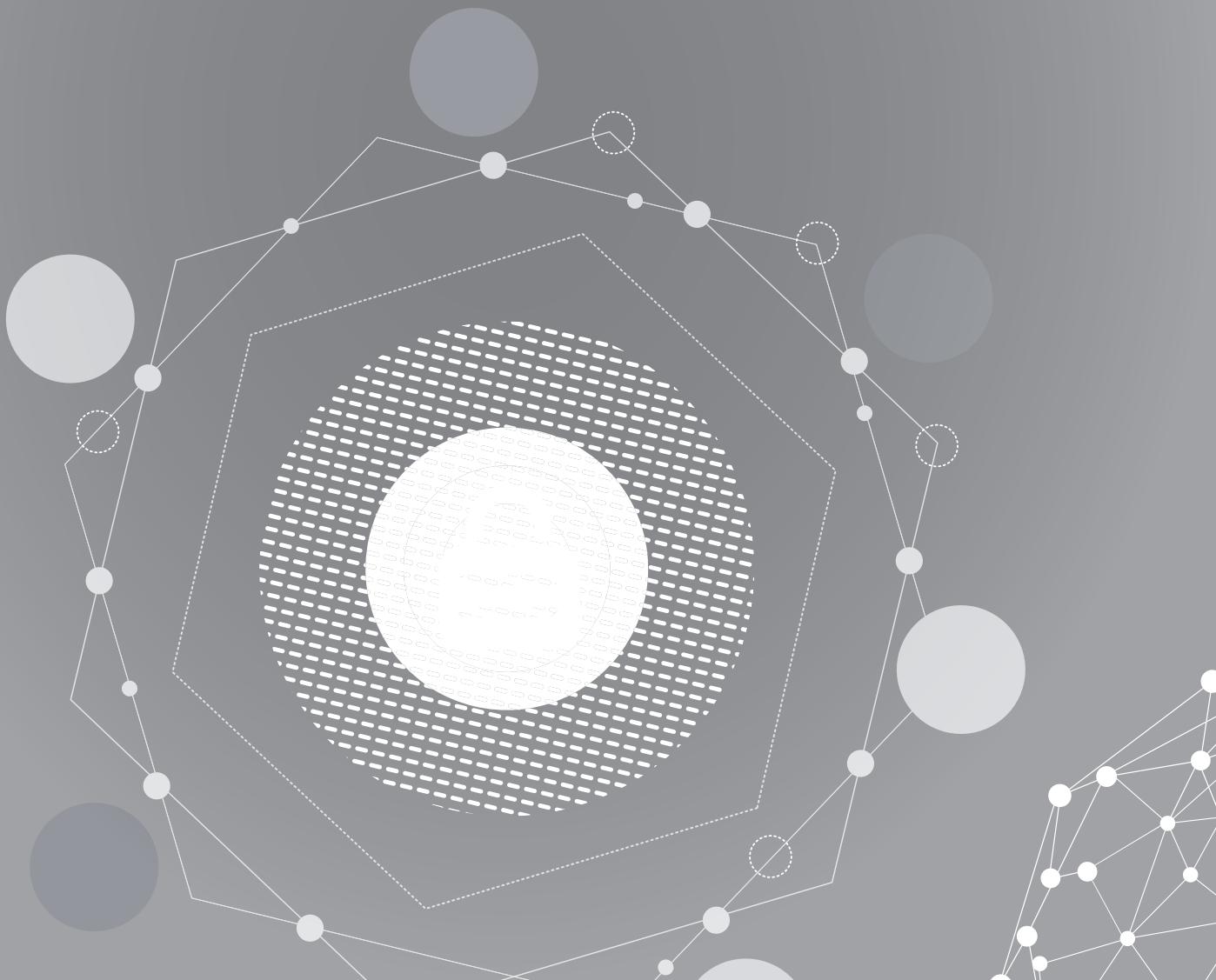


2017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주최 ·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 (목적)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3.24 발표) 및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7 제정) 주요내용 소개

□ 행사 개요

- 행사명 : 1.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설명회
 2.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업자 대상 설명회
- 일 시 : '17. 4. 3.(월), 14:00 ~ 16:00
- 장 소 : HJ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2(역삼동 708-4)
- 주최/주관 : 방송통신위원회(KCC)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참석대상 :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 회원사 / 스마트폰 앱 관련
 사업자 및 인터넷 광고 사업자 등

□ 프로그램

시간	세부 내용
14:00~15:00 (총 1시간)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설명회
14:00~14:40 (40분)	■ 주제발표: 방송통신위원회 이기훈 사무관
14:40~15:00 (20분)	■ 플로어 질의 · 답변
15:00~16:00 (총 1시간)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업자 대상 설명회
15:00~15:40 (40분)	■ 주제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 최광희 수석연구원
15:40~16:00 (20분)	■ 플로어 질의 · 답변

목 차

1.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1
I. 개요	9
II. 적용범위	13
III.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	16
IV.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25
V. 관련 규정	32

2.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7
I. 목적 및 범위	43
II. 주요 정의	43
III.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45
불임.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54

1.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I. 개요
- II. 적용범위
- III.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
- IV.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 V. 관련 규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17. 3.



[목 차]

I. 개요	9
① 앱 생태계 개요	9
② 용어 정의	9
③ 기본 원칙	11
II. 적용범위	13
① 스마트폰의 범위	13
②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	13
③ 정보와 기능의 범위	14
④ 적용 시기	15
III.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	16
① 앱 서비스 제공자	16
② 운영체제 공급자	22
③ 스마트폰 제조업자	24
④ 앱 개발자	24
⑤ 앱 마켓 사업자	24
IV.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25
①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25
② 접근권한 동의 여부 선택	27
③ 접근권한의 철회	29
V. 관련 규정	32

< 추진 배경 >

-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란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 ◇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 이러한 앱 접근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발생

(사례1) 일부 스마트폰의 손전등 기능 앱을 제공한 사업자가 앱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접근권한을 악용해 이용자 1,000만명의 위치정보와 개인일정 등을 해외 광고회사로 넘겨 부당 이익을 취한 사건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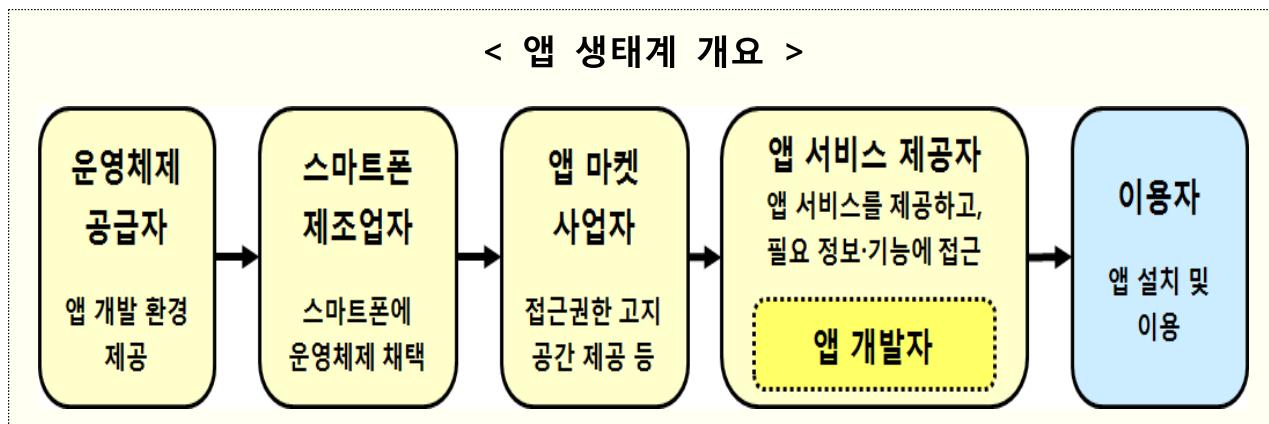
(사례2) 안전사고 신고 기능을 제공하는 공공 앱에서 신고 기능과 무관하게 통화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접근권한을 요구

- ◇ 이에 지난 '16.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와 '17. 3월 동법 시행령 제9조의2가 신설되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 ◇ 본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 운영체제 공급자 등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함
※ '15. 8. 6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본 안내서로 대체
- ◇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도한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안내서를 적용하고자 함

I. 개요

1 앱 생태계 개요

- o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 단말장치에서 앱을 설치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 ①앱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인 운영체제, ②운영체제를 채택한 스마트폰, ③앱을 등록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앱 마켓, ④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앱 서비스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해야 함
- o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앱 생태계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체계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



2 용어 정의

- o **앱*** :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이며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뜻함

* 네이버 앱, 카카오톡 앱, 티맵 앱, 고속도로교통정보 앱 등

○ **운영체제 공급자***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앱을 실행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하 ‘운영체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3항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를 뜻함

* 구글(안드로이드OS), 애플(iOS),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즈OS), 삼성전자(타이젠) 등

○ **스마트폰 제조업자***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제조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3항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를 뜻함

*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화웨이 등

○ **앱 마켓 사업자*** : 이용자와 앱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앱이 거래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는 사업자

*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스토어), KT-LG유플러스·원스토어(원스토어), 삼성(갤럭시 앱스) 등

○ **앱 서비스 제공자*** : 앱을 앱 마켓에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뜻하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동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니지만 본 안내서상의 앱 서비스 제공자로 봄

* 네이버, 카카오, SKT, 한국도로공사 등

※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도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갖게 됨

○ **앱 개발자** : 스마트폰의 앱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3항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를 뜻함

3

기본 원칙

① 앱 서비스 제공자

- 앱이 스마트폰 내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을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해야 함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하 ‘필수적 접근권한’)과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접근권한(이하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한 후,
 - 이용자로부터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

-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적 접근권한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제12호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스마트폰 내 정보·기능에 접근하면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형벌, 행정벌**을 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처분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②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개발자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 이미 이용자가 동의한 접근권한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개발자는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동법 제7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 앱 마켓 사업자

- 접근권한과 관련한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운영해야 함

④ 이용자

- 필수적 접근권한 및 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접근권한의 허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 후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앱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하여 접근권한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고

II. 적용범위

1

스마트폰의 범위

- o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에 적용(이하 '스마트폰')
 - 2G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경우, 사실상 앱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자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 스마트워치는 화면 크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동의 기능을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선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권장
다만, 고지·동의 기능이 구현된 기기가 제조된 이후부터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동일하게 적용

2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

- o 동의 대상 접근권한의 범위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으로 함
 - 앱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제 하에서 스마트폰 내에서만 동작하는 경우*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해당 정보와 기능에 접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동의 대상에서 제외
- *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와 정보 송수신이 없는 계산기 앱, 시계 앱, 캘린더 앱 등

- 또한, 스마트폰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앱(선탑재앱)이 스마트폰의 본질적인 기능(통신, 촬영, 영상 및 음악 재생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권한도 동의 대상에서 제외

☞ 전화통화 앱, 메시지 앱, 사진촬영 앱, 인터넷 연결 앱, 연락처 앱 또는 앱 스토어 등의 선탑재앱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하며, 사진촬영 앱이 연락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와 같이 본질적인 기능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 대상인 접근권한의 범위에 해당됨

3 정보와 기능의 범위

0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OS(구글)와 iOS(애플) 등이 동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접근권한의 범주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자 통제가 필요한 범위로 설정

- (**(이용자 저장 정보*)**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저장한 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설사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 등

- (**(자동 저장 정보*)** 스마트폰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입력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는 축적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 (단말장치 식별 고유정보*)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식별할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도 식별될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1:1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IMEI) 및 MAC 주소 등

- (입력·출력 기능) 스마트폰의 기능에 접근 · 동작하여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의 대상에 포함

* 영상촬영 기능, 음성인식 기능,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기능 등

4 적용 시기

- o 본 안내서는 '17. 3. 23일 이후 스마트폰 앱 또는 운영체제를 공급하거나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경우부터 적용
- o 또한, '17. 3. 22일 이전에 앱 또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17. 3. 23일 이후에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 '17. 3. 22일 이전에 앱 또는 운영체제를 공급하고 '17. 3. 23일 이후에 갱신(업데이트)한 경우에도 적용

☞ '갱신'이라 함은 접근권한의 변경뿐만 아니라 앱의 성능·기능 개선, 오류(버그) 수정, 이용자 사용환경(UI/UX) 변경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다만, 접근권한의 변경 없이 단순히 보안 강화를 위한 개선은 갱신으로 보지 않음

- o 다만, '17. 3. 23일 당시 제조 중인 스마트폰으로서 '17. 3. 23일 이전에 운영체제를 이미 결정하여 제조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III. 사업자 유형별 준수 사항

1 앱 서비스 제공자

- ◇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의 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 ①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②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③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①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 고지 내용

- 0 앱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 ①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②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함
 -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 상기 ①, ②와 함께 ③ 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 0 해당 접근권한이 필수적인지, 선택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함
 - 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접근권한 고지 시 별도 안내한 내용 등을 기초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하되,
-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

②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설령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범위에서 제외

③ 해당 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으로서 해당 서비스와의 기술적 관련성이 존재해야 함

② 고지 방법 및 절차

- o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앱 안내정보 화면,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알려야 함

가. 이용자가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하는 앱의 경우

- o (앱 설치 시) 이용자가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때 ‘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 ‘설명→더보기(애플 앱스토어)’ 또는 ‘설명 또는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원스토어)’란 등에 상기 고지 내용을 알림

*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경우에 해당함

☞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의 경우, 앱 실행 시 접근권한에 대해 개별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앱을 설치할 때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여 고지해야 함

[그림 1]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음악 앱)

1단계	2단계								
<p>[안드로이드폰]</p> <p>사진으로 공유해보세요. 빠르고, 무료이며, 재미있습니다!</p> <p>자세히 알아보기</p>	<p>[필수적 접근권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이유</th> </tr> </thead> <tbody> <tr> <td>저장 권한</td> <td>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td> </tr> <tr> <td>전화 권한</td> <td>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td> </tr> <tr> <td>SMS 권한</td> <td>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td> </tr> </tbody> </table>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p>[아이폰]</p> <p>설명</p> <p>은 세상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여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활용하여 최근 소식을 확인하거나 관심 있는 정보를 공유한 계정을 저 세계에서 찾아보세요.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크고 작은 다양한 순간들을 나만의 스티커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p>	<p>[선택적 접근권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이유</th> </tr> </thead> <tbody> <tr> <td>위치 권한</td> <td>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td> </tr> </tbody> </table> <p>※ 선택적 접근권한의 허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p>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그림 2] 본 안내서의 접근권한 고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사례

- 현재 각 운영체제별로 기본 설정(Default) 값으로 제공하는 '권한정보'의 접근권한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간단한 설명은 접근권한의 항목, 이유 등의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지 내용으로 볼 수 없음

개발자	카메라 • 사진과 동영상 찍기
웹페이지 방문	연락처 • 기기에서 계정 검색 • 주소록 수정 • 주소록 읽기
이메일 보내기	위치 • 대략적인 위치(네트워크 기반) • 정확한 위치(GPS 및 네트워크 기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마이크 • 오디오 녹음
권한 정보	

- 0 (앱 실행 시)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여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팝업 창 등을 통해 상기 고지 내용을 먼저 알려서 확인하게 한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그림 3] 앱 실행 시 접근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음악 앱)

1단계 (고지)	2단계 (동의)
<p>[필수적 접근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 권한 :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을 위해 접근이 필요합니다. <p>○○○ 사용을 위해 다음 권한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p>	<p>○○○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저장 권한 사용</p> <p style="text-align: right;">거부 허용</p>

☞ iOS 10.0 버전에서는 단일의 팝업 창에서 고지 내용을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신설되었는데,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경우 이 역시 본 안내서에 따른 고지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설치 시 또는 앱 실행 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하면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게 되나,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앱 실행 시에만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한 번 고지 후 소멸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앱 설치 시에만 앱 마켓에서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팝업 창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나. 선탑재 앱의 경우

- 0 선탑재 앱의 경우, 앱 마켓에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알려야 함

- ① 해당 앱의 최초 실행 화면에서 고지하는 방법
- ② 운영체제 최초 구동 화면에서 고지하고 운영체제별 설정 화면 또는 앱에 별도 메뉴를 개설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접근권한의 고지 내용을 쉽게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동의 방법 및 절차

- 앱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체제별로 제공하는 앱 개발환경에 맞게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여야 함

< 주의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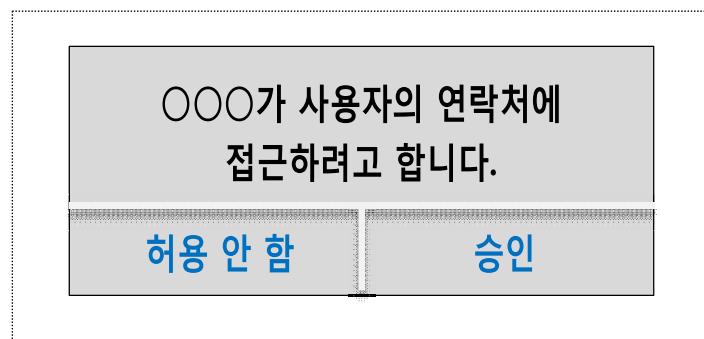
-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는 해당 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는 아니므로, 만약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개인정보이고 이를 앱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는 경우에는 앱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가.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구글의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 애플의 iOS

- 앱의 실행 시점이 아니라 앱에서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구현

[그림 4]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에 맞추어 접근권한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해 앱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없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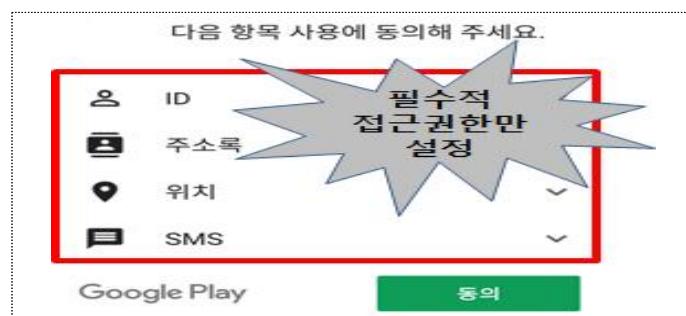
따라서, 앱 서비스 제공자는 ①‘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②이용자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6.0 버전부터 동의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해당 스마트폰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6.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더라도 기존 앱에서 동의한 접근권한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해야합니다.’라고 알려야 함

나.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구글의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

○ 해당 운영체제에서는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불가능 하므로 앱의 접근권한을 설정할 때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고, 앱을 설치할 때 해당 권한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하도록 구현

[그림 5] 개별 동의가 불가능한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이용자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 접근할 때 이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구현해야 하며, 사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앱이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에 맞추어 개발된 경우**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앱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2

운영체제 공급자

① 동의 기능 제공

0 운영체제 공급자는 앱 개발자가 접근권한별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따른 앱 개발환경을 제공해야 함

-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접근권한은 6~7쪽의 정보와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이 포함되도록 함

☞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을 때 동의를 받는 창에 해당 접근권한이 필수적 접근권한인지, 선택적 접근권한인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동의철회 기능 제공

0 운영체제 공급자는 이용자가 이미 동의한 접근권한에 대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통하여 제공해야 함

☞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앱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해당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된 경우라면 동의 철회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만약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에서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라면, 앱 서비스 제공자는 사후에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함

[그림 6] 운영체제별 동의 철회 기능 예시

구분	동의 철회 기능 1 (앱별 철회)	동의 철회 기능 2 (접근권한별 철회)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6.0 이상 버전)		
안드로이드폰 (6.0 미만 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한 경우) 해당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된 경우라면 동의 철회 기능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선택적 접근권한 설정 기능을 앱 자체에서 구현한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 	

③ 접근권한 운영 기준 공개 및 보안조치

0 운영체제에서 상기 동의·철회 기능을 제공하는 사실과 함께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운영기준*을 앱 개발자가 알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해야 함

* 연락처·일정 등 접근권한별 해당 정보와 기능에 대한 명세

- 본 안내서의 내용을 운영체제별 개발자 사용 화면 등을 통해 홍보 필요

0 또한, 앱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응용프로그램 규격(API) 등의 개발환경이나 도구를 제공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3

스마트폰 제조업자

- 0 스마트폰 제조업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안내서에 따른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이 적정하게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야 함

4

앱 개발자

- 0 앱 개발자는 관련 법령 및 본 안내서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된 스마트폰과 운영체제의 환경에 맞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을 구현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향후 제공 예정인 서비스를 위해 미리 접근권한을 설정해서는 안 됨

5

앱 마켓 사업자

- 0 (접근권한 고지 공간·환경 제공) 앱 마켓 사업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 마켓에 앱 등록 시, 접근권한 관련 고지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앱 개발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함
- 0 (접근권한 검수 절차 운영) 앱 서비스 제공자가 불필요한 접근권한을 설정·운영하지 않도록 접근권한에 대한 자체적인 검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된 앱에 대한 접근권한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편 사례가 접수된 경우 이를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내하여 개선요청, 삭제조치 등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0 (앱 서비스 제공자 대상 홍보) 본 안내서의 내용을 앱 마켓상 앱 등록 화면 등을 통해 홍보

IV. 이용자의 접근권한 통제 방법

- ◇ 이용자는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 이용자는 앱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하여 접근권한을 사후적으로 통제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고할 수 있음

1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 o 이용자는 앱에 따라 ①앱 설치 시 앱 안내정보 화면을 통해 또는 ②앱 실행 시 별도 화면을 통해,
 - 해당 앱에서 접근권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보와 기능의 항목, 그 항목이 필요한 이유, 그 항목이 필수적 접근권한인지 선택적 접근권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앱에 따라 ①, ②의 방법이 모두 구현되거나 하나의 방법만 구현된 경우가 있음

① 앱 설치 시

- o 이용자는 앱 마켓에서 설치하려는 앱을 검색한 후, ‘자세히 알아보기 (구글 플레이)’, ‘설명→더보기 (애플 앱스토어)’ 또는 ‘설명 또는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 (원스토어)’란 등에서 상기 고지 내용을 확인

* 별도 접근권한 안내창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경우에 해당함

[그림 7]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방법

1단계	2단계								
<p>[안드로이드폰]</p>  <p>설치 광고 포함</p> <p>10 억 4.5 ★★★★☆ (45,673,376) 다운로드 수 소셜 유사 항목</p> <p>사진으로 공유해보세요. 빠르고, 무료이며, 재미있습니다!</p> <p>자세히 알아보기</p>	<p>[필수적 접근권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이유</th> </tr> </thead> <tbody> <tr> <td>저장 권한</td> <td>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td> </tr> <tr> <td>전화 권한</td> <td>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td> </tr> <tr> <td>SMS 권한</td> <td>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td> </tr> </tbody> </table>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p>[아이폰]</p>  <p>★★★★☆ (196) Apple Watch 앱 제공</p> <p>세부사항 리뷰 관련 콘텐츠</p> <p>설명</p> <p>은 세상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여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끌어오거나 최근 소식을 확인하거나 관심 있는 정보를 공유한 계정을 저 세계에서 찾아보세요. 넘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크고 작은 다양한 순간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p>	<p>[선택적 접근권한]</p>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이유</th> </tr> </thead> <tbody> <tr> <td>위치 권한</td> <td>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td> </tr> </tbody> </table> <p>※ 선택적 접근권한의 허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p>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② 앱 실행 시

- 0 이용자는 설치한 앱을 실행하여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고자 할 때, 팝업 창 등을 통해 앱이 접근하려는 정보와 기능에 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8]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 내용 확인 방법

<p>[필수적 접근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 권한 :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을 위해 접근이 필요합니다. <p>○○○ 사용을 위해 다음 권한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다음</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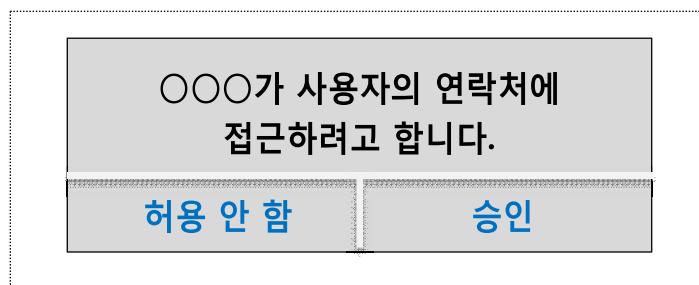
접근권한 동의 여부 선택

①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및 아이폰

- 이용자는 해당 앱이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설정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해당 정보와 기능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됨

[그림 9]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해당 앱에서 설정한 접근권한이 필수적 접근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해당 앱에서 설정한 접근권한이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접근권한의 허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나 **앱이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에 맞추어 개발된 경우** 이용자는 접근권한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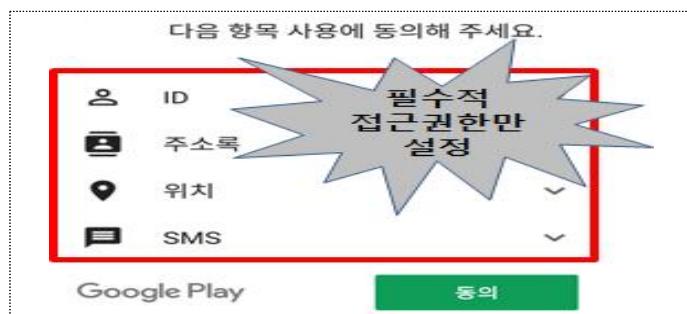
다만, 이 경우에 이용자는 '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 구현되어 있는 접근권한 동의 철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②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

- 0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앱을 설치할 때 앱 설치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면 됨

[그림 11]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에서 동의 화면



- 이러한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 자체적으로 선택적 접근권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와 기능에 최초 접근할 때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됨

☞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에 맞추어 접근권한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설정한 정보와 기능일지라도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는 위 그림과 같이 필수적 접근권한인 것처럼 표시되고, 해당 접근권한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음

따라서, 이용자는 ①'자세히 알아보기(구글 플레이)'란에서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한 후, ②선택적 접근권한으로 설정된 정보와 기능이 본인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앱의 설치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용자는 ①자신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6.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후, ②운영체제가 업그레이드되더라도 기존 앱에서 동의한 접근권한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 후 재설치하는 것이 접근권한에 대한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는 바람직함

3

접근권한의 철회

① 개별 동의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0 이용자는 접근권한에 이미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앱별·접근권한별 동의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각 앱에 대한 접근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 다만,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가. 안드로이드 6.0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 0 (앱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앱’ → ③ 해당 앱 선택 → ④ 권한 선택 → ⑤ 접근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0 (접근권한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앱’ → ③ ‘⋮’ (설정 및 제어) → ④ ‘앱 설정’ → ⑤ ‘앱 권한’ → ⑥ 해당 접근권한 선택 → ⑦ 접근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2017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나. 아이폰

0 (앱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해당 앱 선택
→ ④ 접근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접근권한별 철회 방법) ① ‘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해당 접근권한 선택 → ④ 접근권한 동의 또는 철회 선택



② 개별 동의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 접근권한별 거부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러한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하면 됨

- 이러한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자체적으로 선택적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라면,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동의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접근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 주의 > 개인정보 삭제 시 추가 조치 사항

- 앱 삭제만으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회원탈퇴 등 별도 조치가 필요**

V.

관련 규정

1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 [별표9]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	1,000	2,000	3,000
나. 법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호 의2	1,000	2,000	3,000
푸.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12호			
1) 법 제71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	3,000	3,000
4) 법 제7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8)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I. 목적 및 범위
- II. 주요 정의
- III.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불임.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7. 2.



[목 차]

I. 목적 및 범위	43
II. 주요 정의	43
III.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45
1)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45
2)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48
3)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52
4)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	53
붙임.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54
1) 온라인 맞춤형 광고 화면을 이용하는 방법	54
2)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설정을 이용하는 방법	56

I. 목적 및 범위

- (목적)**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함
 - ①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광고에 이용되는 개인의 행태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할 보호 원칙과 방법을 제시
 - ②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안내
- (적용 범위)** 이용자의 온라인(모바일 웹·앱 포함)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II. 주요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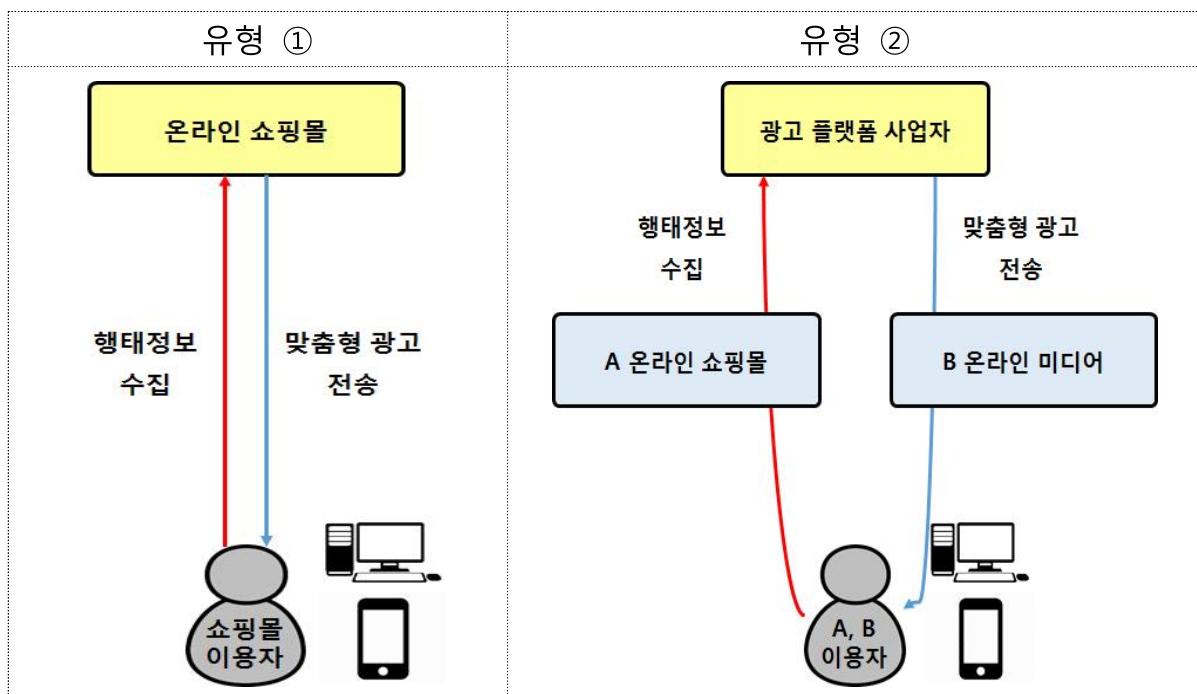
1. **온라인 행태정보** :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 (이하 “행태정보”)
2. **온라인 맞춤형 광고** : 행태정보를 처리하여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분석·추정한 후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고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목적이 아니며,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 환경(UX, UI 등)을 이용자별로 상이하게 구성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본 가이드라인상 맞춤형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3.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 : 자사 또는 타사의 웹사이트 및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이하 “광고 사업자”)

※ **유형①** : 자사 사이트를 통해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당사자 광고)

※ **유형②** : 타사 사이트를 통해 타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타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제3의 온라인 매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 (제3자 광고)



4. 온라인 광고 매체 사업자 : 자사 웹사이트 및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행태정보의 수집을 허용하거나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전송되도록
하는 사업자 (이하 “매체 사업자”)

※ 예 : 포털사,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게임회사, 온라인 미디어 등

III.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원칙

1.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 ◇ 광고 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가.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 자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하여 맞춤형 광고를 직접 전송하는 광고 사업자(2쪽 유형①)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앱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안내 사항 >

①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② 행태정보 수집 방법
③ 행태정보 수집 목적	④ 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⑤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⑥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등)를 준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하여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광고 사업자(2쪽 유형②)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내부나 주변부에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설치하고,

- 표지와 링크된 별도 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안내 사항 >

①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명	③ 행태정보 수집 방법
②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⑤ 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④ 행태정보 수집 목적	⑦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⑥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 이 때, '안내 표지 (①, ◎ 등)'가 '광고'와 충분히 구분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하여, 이용자가 '안내 표지'를 클릭하였음에도 '광고'가 클릭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안내방법 예시 >

 조트 & 스파  최저가 ₩323,094 마음에 쓱 드는 호텔 예약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①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처 사업자</td><td style="padding: 5px;">000 광고 컴퍼니 (000 앱)</td></tr> <tr> <td style="padding: 5px;">② 수집하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항목</td><td style="padding: 5px;">-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 - 이용자의 검색 이력</td></tr> <tr> <td style="padding: 5px;">③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방법</td><td style="padding: 5px;">- 이용자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전송 - 이용자 앱 실행 시 자동 수집 전송</td></tr> <tr> <td style="padding: 5px;">④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목적</td><td style="padding: 5px;">사용자 관심 기반의 맞춤형 광고 제공</td></tr> <tr> <td style="padding: 5px;">⑤ 온라인 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td><td style="padding: 5px;">- 웹사이트 방문 정보 00일 - 상품 구매 정보 00일 - 애플리케이션 이용 정보 00일</td></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1. 이용자 맞춤형 광고 설정  수신  거부  </td></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 2. 기타 방법 - 웹 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 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관련 협회 : 온라인 광고 협회 </td></tr> <tr> <td style="padding: 5px;">⑥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td><td style="padding: 5px;">담당자 : 000 전화 : 02-123-4567, E-MAIL : 000@000.kr</td></tr> <tr> <td style="padding: 5px;">⑦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td><td style="padding: 5px;"></td></tr> </table>	①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처 사업자	000 광고 컴퍼니 (000 앱)	② 수집하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항목	-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 - 이용자의 검색 이력	③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방법	- 이용자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전송 - 이용자 앱 실행 시 자동 수집 전송	④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목적	사용자 관심 기반의 맞춤형 광고 제공	⑤ 온라인 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 웹사이트 방문 정보 00일 - 상품 구매 정보 00일 - 애플리케이션 이용 정보 00일	1. 이용자 맞춤형 광고 설정  수신  거부 		2. 기타 방법 - 웹 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 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관련 협회 : 온라인 광고 협회		⑥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담당자 : 000 전화 : 02-123-4567, E-MAIL : 000@000.kr	⑦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①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처 사업자	000 광고 컴퍼니 (000 앱)																			
② 수집하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항목	-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 - 이용자의 검색 이력																			
③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방법	- 이용자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전송 - 이용자 앱 실행 시 자동 수집 전송																			
④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목적	사용자 관심 기반의 맞춤형 광고 제공																			
⑤ 온라인 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 웹사이트 방문 정보 00일 - 상품 구매 정보 00일 - 애플리케이션 이용 정보 00일																			
1. 이용자 맞춤형 광고 설정  수신  거부 																				
2. 기타 방법 - 웹 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 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관련 협회 : 온라인 광고 협회																				
⑥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담당자 : 000 전화 : 02-123-4567, E-MAIL : 000@000.kr																			
⑦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온라인 맞춤형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별도 안내표지 마련	표지 클릭 시 안내 페이지로 연결	안내 페이지에 안내 사항을 포함한 설명 게시																		

- 매체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하여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 ①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광고 사업자명, ② 행태정보 수집 방법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나. 최소 정보 수집

-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광고 사업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행태정보를 이용·분석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14세 미만자의 행태정보 보호

- 광고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이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

- 광고 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가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3의 광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①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및 ③ 행태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을 통해 표시하여야 한다.

마. 개인 식별정보와의 결합

- 광고 사업자가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용목적, 결합되는 정보항목,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 ◇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온라인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아래의 수단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다양한 통제 수단과 이용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하여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광고 사업자의 경우 아래 '가'의 수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광고 화면 등을 통해 통제권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

- o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 등을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통제 수단은 「1.가」에 따른 안내 시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차단 또는 허용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안내 및 통제방법 예시 >

①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처리 사업자	○○○ 광고 컴퓨터 (○○○ 앱)
② 수집하는 온라인 행태정보의 항목	-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 이용자의 앱 사용 이력 - 이용자의 검색 이력
③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방법	- 이용자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전송 - 이용자 앱 실행 시 자동 수집·전송
④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목적	사용자 관심 기반의 맞춤형 광고 제공
⑤ 온라인 행태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이후 정보처리 방법	- 웹사이트 방문 정보 ○○일 - 상품 검색 정보 ○○일 - 애플리케이션 이용 정보 ○○일
⑥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p>1. 이용자 맞춤형 광고 설정 수신</p>  <p>2. 기타 방법 - 웹 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 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관련 협회 : 온라인 광고 협회</p>
⑦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담당자 : ○○○ 전화 : 02-123-4567, E-MAIL : ○○○@○○○.kr

※ 파란색은 링크형태로 관련 설명이 있는 페이지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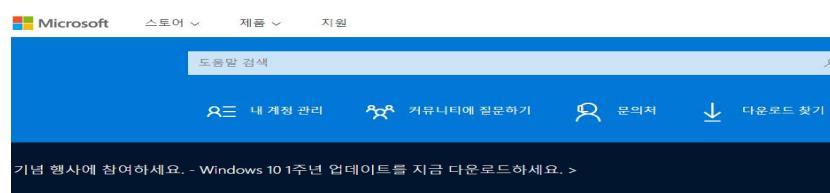
나. 이용자 단말기를 통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법

- o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PC,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에서 쿠키 및 인터넷 이용기록을 삭제·차단함으로써 인터넷 맞춤형 광고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링크하는 방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① 웹 브라우저에서의 통제 방법

- 광고 사업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 광고를 수신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이 때, 웹 브라우저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쿠키 차단 및 삭제 방법의 링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수신·차단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



쿠키 삭제 및 관리

[전자 메일](#)
[인쇄](#)

쿠키란?

쿠키는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기본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PC에 추가하는 작은 파일입니다. 쿠키는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기억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로그인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검색 환경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일부 쿠키는 사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를 추적함으로 개인 정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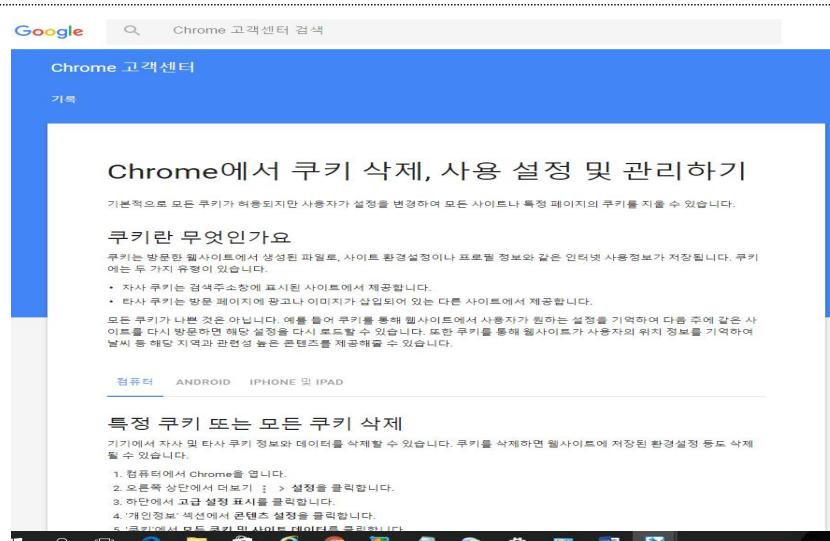
- ▼ [쿠키를 삭제하려면](#)
- ▼ [Internet Explorer 8에서 쿠키를 삭제하려면](#)

쿠키 차단 또는 허용

사이트에서 PC에 쿠키를 저장하지 않도록 하려면 쿠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키를 차단하면 일부 페이지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거나 사이트를 보려면 쿠키를 허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차단하면 일부 페이지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거나 사이트를 보려면 쿠키를 허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url :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17442/windows-internet-explorer-delete-manage-cookies#ie=ie-11>

< 크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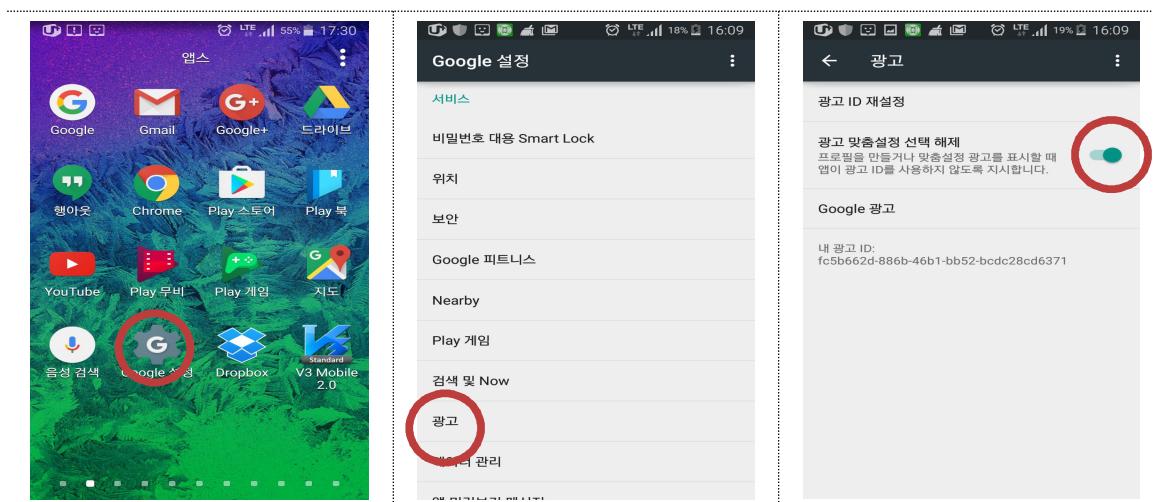


url :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647?hl=ko>

② 스마트폰에서의 통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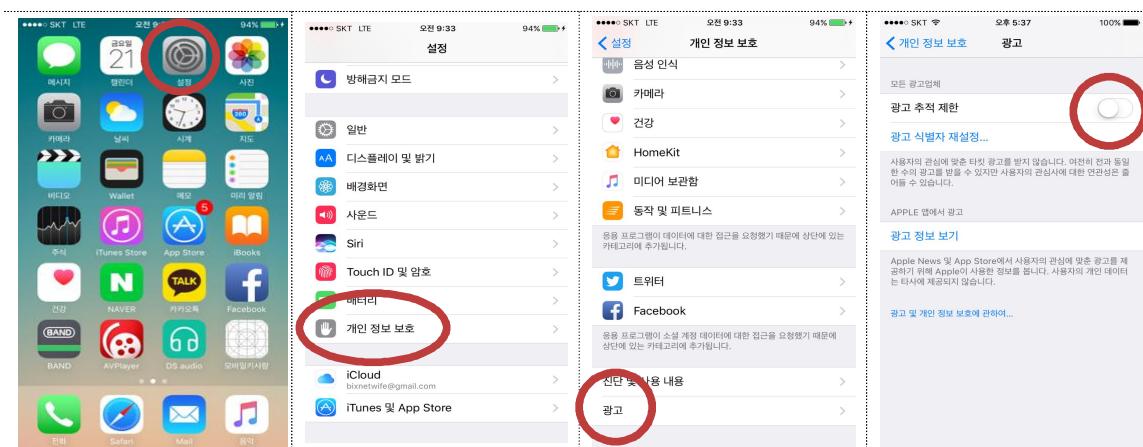
- o 광고 사업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맞춤형 광고를 수신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예시 : 안드로이드폰) ① 구글설정 → ② 광고 → ③ 광고 맞춤 설정 선택 또는 해제

< 설정 방법 >



- (예시 : 아이폰) ① 아이폰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광고 → ④ 광고 추적 제한

< 설정 방법 >



다. 협회 등의 단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제공하는 방법

- 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수신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협회 등 관련 단체의 해당 웹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링크와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미국에서 협회 등의 단체를 통하여 이용자 통제권을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하여 각 단체 및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 예시 >

The image contains two side-by-side screenshots of user interface components for managing interest-based ads.

Top Screenshot (All Participating Companies):

- Header:** All Participating Companies (127)
- Section:** Companies Customizing Ads For Your Browser (91)
- Content:** A list of company names (33Across, Accuen, AcuityAds Inc., Adbrain, AddThis (including XGraph), Adelphic, AdGear Technologies, Inc., Adobe Marketing Cloud - Advertising Services, AdRoll, Aggregate Knowledge, Inc., Amazon Ad System) each with a checkbox next to it under the heading "SELECT ALL SHOWN".
- Text:** "These 91 participating companies have enabled interest-based ads for this web browser." and "Click the company name to find out more about a participating company. To opt out from interest-based ads by one or more companies, check the box(es) in the "Select" column next to the company name(s), and then hit the "Submit your choices" button. You can also click the "Select all shown" box to pre-check all the listed companies before you hit the "Submit" button." with a "Need help?" link.
- Buttons:** "Submit your choices" button.

Bottom Screenshot (NAI Members):

- Header:** All NAI Member Companies (100)
- Section:** NAI Members Customizing Ads For Your Browser (71)
- Content:** A list of company names (33Across, Accuen, AcuityAds Inc., AddThis, Adobe Marketing Cloud - Advertising Services, AdRoll, Aggregate Knowledge, Inc., AOL Advertising, AppNexus, Inc.) each with a checkbox next to it under the heading "Select all".
- Text:** "These 71 member companies have enabled Online Behavioral Ads for this web browser." and "Click the company name to find out more about a member company. To opt out from targeted ads by one or more member companies, check the box(es) in the "Select" column next to the company name(s), and then hit the "Submit your choices" button. You can also click the "Select all shown" box to pre-check all the listed companies before you hit the "Submit" button. [Need help?](#)"
- Buttons:** "Submit your choices" button.

3.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
- ◇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광고 사업자는 법률에 의해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만큼만 행태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가. 보호조치

- o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의 유·노출,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47조의3(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및 방통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필요한 조치 등을 참고

나. 정보보관

- o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의 장기간 저장·보관으로 인한 행태정보의 유출, 부정사용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o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목적을 위해 수집한 행태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저장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 보유기간 및 목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특히, 보유기간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단, 사고조사 등 다른 법률적 요구가 있거나 명백히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즉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4.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

-
- ◇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나 광고주 등에게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행태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문의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가. 인식확산

- o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 및 광고주 등에게 수집·이용되는 행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기술 및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나. 피해구제

- o 광고 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이용자의 문의,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피해구제 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 o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피해구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불임.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 이용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검색 기록, 앱 사용 기록 등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알아 볼 수 있나요?

-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최근에 방문한 웹사이트, 검색어, 오픈마켓 등에서의 검색 이력, 앱 사용 이력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광고로 최근 본인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입니다.
-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사용하는 PC나 단말기에 따라 다른 광고가 보여지고, 이러한 광고가 본인의 최근 온라인상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온라인 맞춤형 광고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등산 용품을 검색했더니, 다른 웹사이트(앱)를 방문할 때도 등산용품 관련 광고가 표시되는 경우

-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수신을 차단하였다고 하여 광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광고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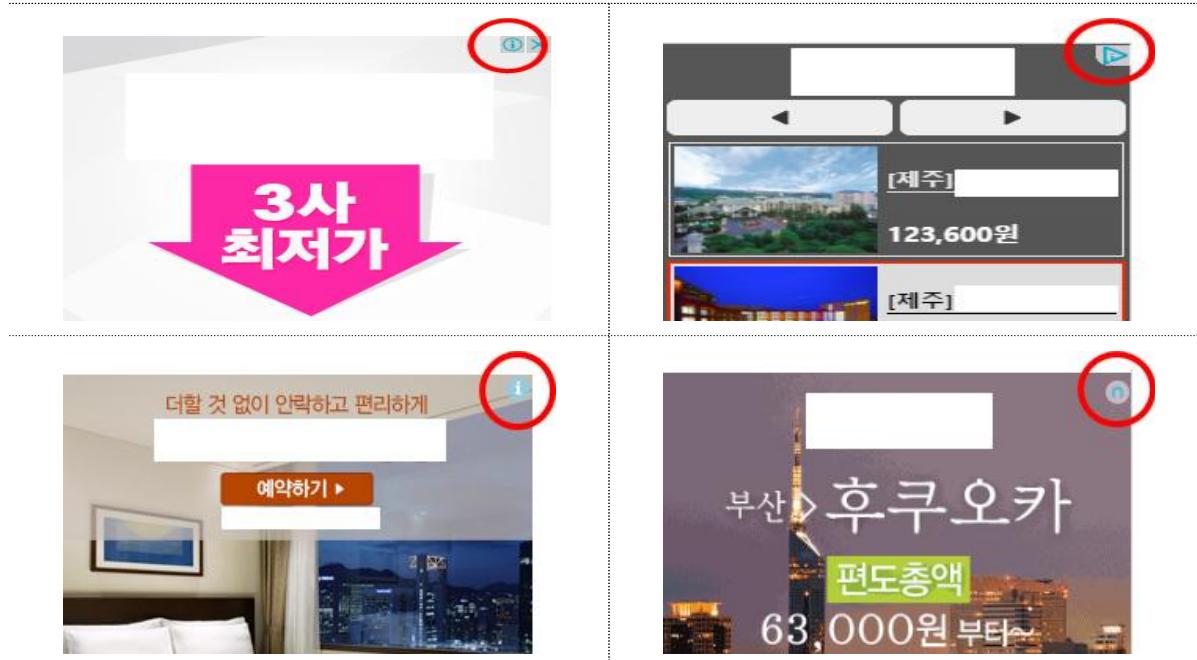
1. 온라인 맞춤형 광고 화면을 이용하는 방법

- 이용자는 광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내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차단·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이용자가 가장 쉽게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차단·허용 할 수 있는 반면에, 한 번에 한 개 광고 사업자의 맞춤형 광고만 거절할 수 있어 타 광고사의 맞춤형 광고는 계속 수신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별도 표시되어 있는 표지를 클릭

-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내에 별도 표지(①, ② 등)를 누르면 광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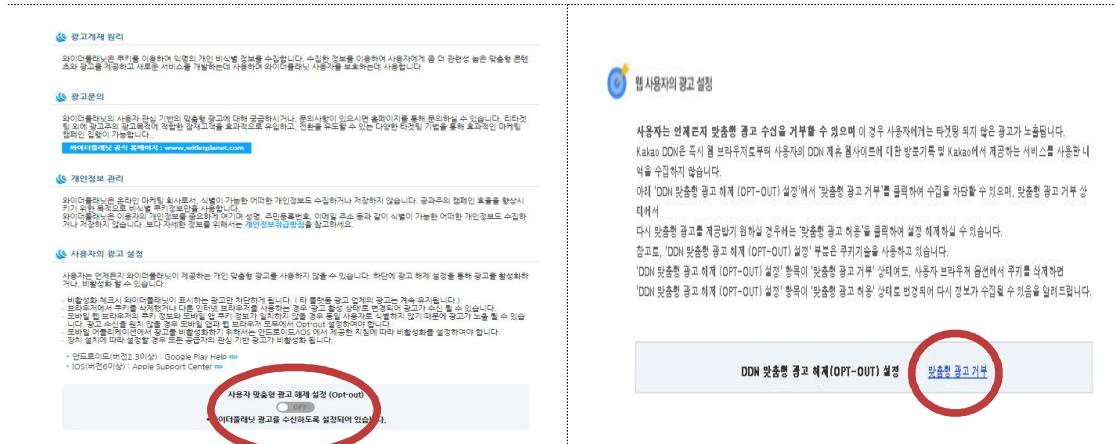
< 별도 표지 예 >



② 맞춤형 광고 거부/수락 버튼 클릭

- 이용자는 광고 사업자가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종류, 사용목적, 보유 기간 등을 확인하고, 맞춤형 광고 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수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

< 거부/허용 버튼 예 >



2.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설정을 이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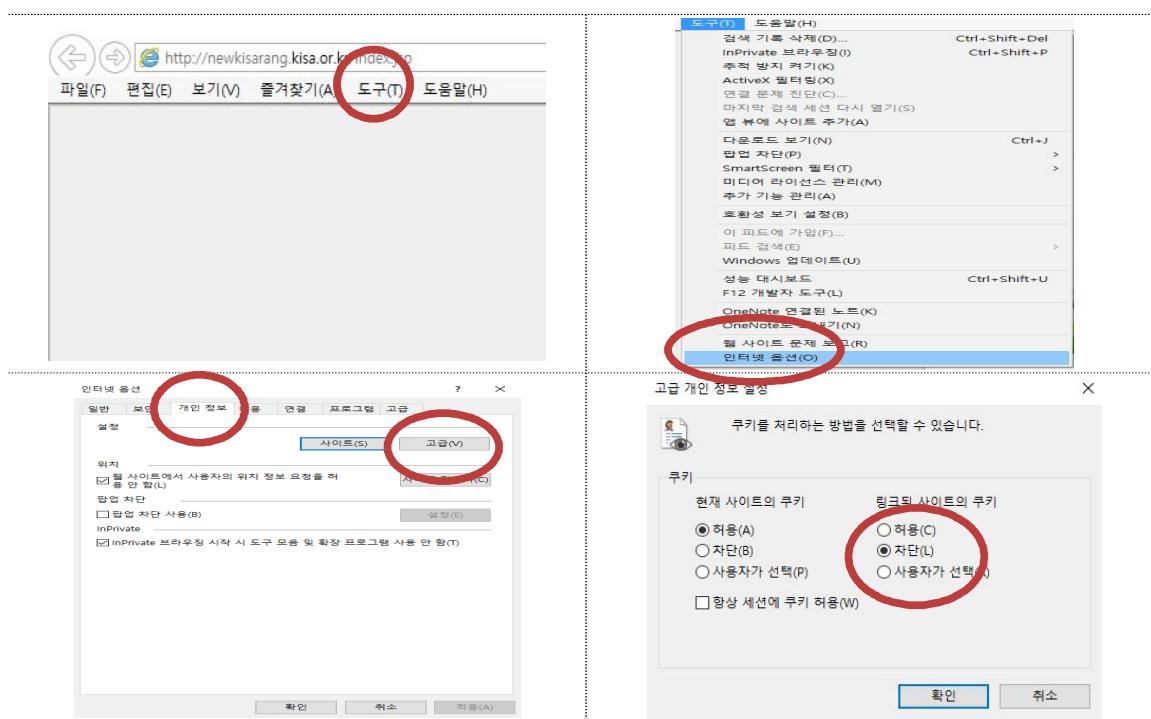
- o 이용자는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설정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차단·허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이용자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일괄적으로 차단·허용할 수 있는 반면에, 자동로그인, 다른 기기에서 접근 차단 등 다른 목적의 행태정보 수집도 차단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웹브라우저를 통한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1) 인터넷 익스플로러(Windows 10용 Internet Explorer 11)

- ① Internet Explorer에서 도구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터넷 옵션을 선택
- ② 개인 정보 탭을 선택하고 설정에서 고급을 선택한 다음 쿠키의 차단 또는 허용을 선택

※ 링크된 사이트 쿠키를 차단하면 맞춤형 광고 수신이 차단됩니다. 현재 사이트의 쿠키를 차단할 경우 자동로그인 등의 기능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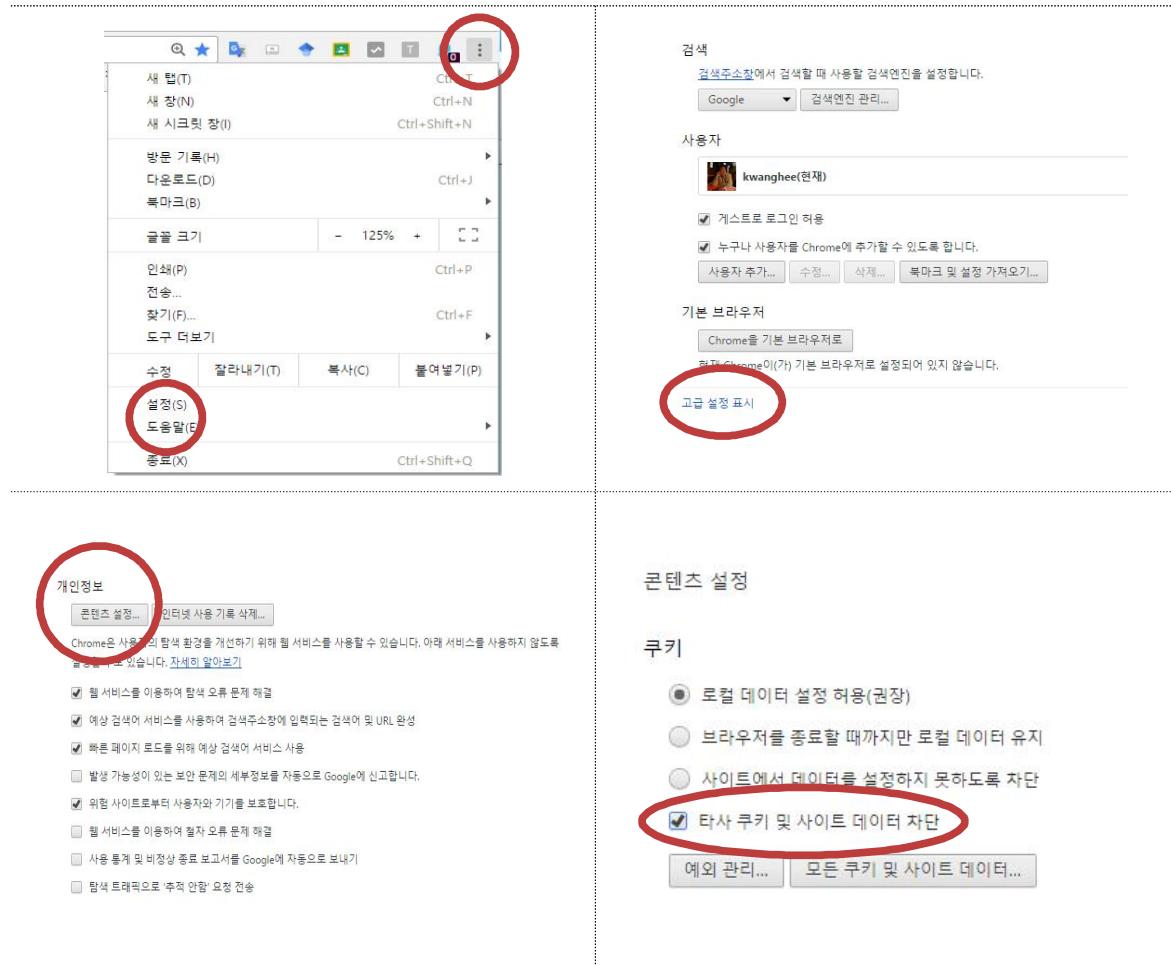


2) 크롬 브라우저

- ① Chrome에서 오른쪽 상단 ':' 표지(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를 클릭한 후, 설정 표시를 클릭합니다.
- ② 설정 페이지 하단에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하고 「개인정보」 섹션에서 콘텐츠 설정을 클릭합니다.
- ③ 쿠키 섹션에서 '타사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차단'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타사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차단하면 맞춤형 광고 수신이 차단됩니다. 사이트내에서 데이터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자동로그인 등의 기능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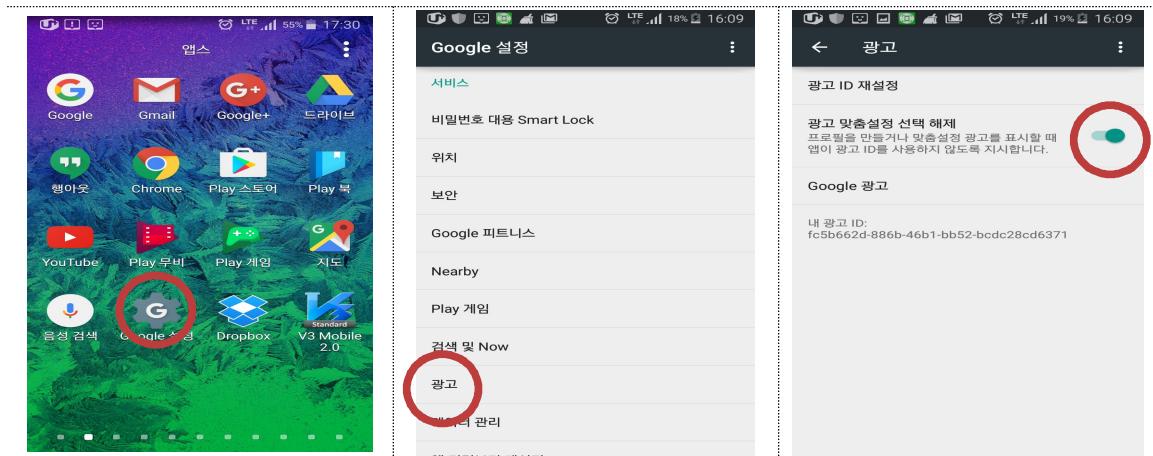
< 설정방법 예시 >



나.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 1) (예시 : 안드로이드폰) ① 구글설정 → ② 광고 → ③ 광고 맞춤 설정 선택 또는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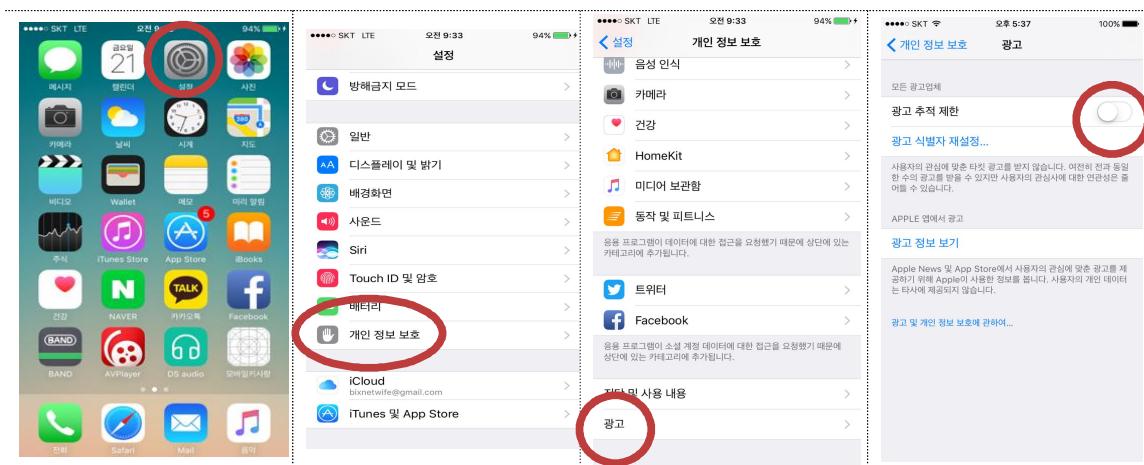
< 설정 방법 >



※ OS 버전에 따라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 (예시 : 아이폰) ① 아이폰설정 → ② 개인정보보호 → ③ 광고 → ④ 광고 추적 제한

< 설정 방법 >



※ OS 버전에 따라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 사항

-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에서 모두 맞춤형 광고를 거절하고 싶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와 스마트폰 설정에서 모두 맞춤형 광고를 거절하여야 합니다.